

대법원 2022. 6. 30 선고 2018다268576 판결 [사해행위취소] [공2022하, 1432]

판 시 사 항

[1] [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](#)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는지 여부(적극) 및 위 규정에 따른 '상속으로 받은 재산'을 계산할 때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공제되는 부채총액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가 포함되는지 여부(소극)

[2] 갑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 일부를 자녀인 을 등에게 증여한 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사망하자, 국가가 갑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안에서, 상속인인 을 등은 [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](#)에 따라 '상속으로 받은 재산'의 한도에서만 갑의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는데, 을 등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은 채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

판 결 요 지

[1] [구 국세기본법\(2018. 12. 31.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\) 제24조 제1항](#)은 '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

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.'고 정하고 있다.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다.

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'상속으로 받은 재산'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하며(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),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.

[2] 갑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 일부를 자녀인 을 등에게 증여한 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사망하자, 국가가 갑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안에서, 상속인인 을 등은 구 국세기본법(2018. 12. 31.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24조 제1항에 따라 '상속으로 받은 재산'의 한도에서만 갑의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고, '상속으로 받은 재산'이 없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, 원심으로서는 갑의 사망 당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을 등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있는지를 밝힌 다음 이에 따라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,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은 채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정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사해행위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원상회복되어야 할 것도 포함된다고 보아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.

참 조 조 문

[1] 구 국세기본법(2018. 12. 31.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4조 제1항,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[2] 민법 제406조 제1항, 구 국세기본법(2018. 12. 31.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4조 제1항,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

재판경과

대법원 2022. 6. 30 선고 2018다268576 판결

대구지방법원 2018. 9. 5 선고 2018나302436 판결

참조판례

[1] 대법원 1982. 8. 24. 선고 81누162 판결(공1982, 913),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누7395 판결(공1991, 1534)

전문

【원고, 피상고인】 대한민국

【피고, 상고인】 피고 1 외 2인

(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 외 1인)

【원심판결】 대구지법 2018. 9. 5. 선고 2018나302436 판결

주문

원심판결을 파기하고,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(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)를 판단한다.

1. 사건 개요

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.

소외 1은 2014. 2. 1. 대구 달성군에 있는 임야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를 6억 5,000만 원에 매도하고, 그 대금 중 1억 4,230만 원을 2014. 3. 11. 장남 소외 2에게, 3,500만 원을 2014. 5. 13. 차남 피고 3에게 각각 증여하였다. 소외 2는 2014. 3. 12. 위와 같이 증여받은 금액 중 8,700만 원을 피고 1에게, 2,000만 원을 피고 2에게 각각 지급하였다.

남대구세무서장은 2015. 1. 2.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2억 3,514만 3,102원을 부과하였는데, 소외 1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6. 8.경 사망하였다.

2.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

가. [구 국세기본법\(2018. 12. 31.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\) 제24조 제1항](#)은 '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.'고 정하고 있다.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 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다([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누7395 판결](#) 참조).

[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](#)에 따른 '상속으로 받은 재산'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하며([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](#)),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([대법원 1982. 8. 24. 선고 81누162 판결](#)참조).

나. 원심은 원고의 양도소득세와 그 가산금 채권이 소외 1의 위 각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하였다. 피고 1 등은 소외 1이 무자력 상태에서 사망하여 소외 2 등 상속인이 [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](#)에 따라 위 양도소득세 등 채무를 승계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, 원심은 [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](#)이 정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사해행위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원상회복되어야 할 것도 포함된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.

다. 그러나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. 소외 2 등 상속인은 [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](#)에 따라 '상속으로 받은 재산'의 한도에서만 소외 1의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고, 만일 '상속으로 받은 재산'이 없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는다. 따라서 원심으로서 위에서 본 규정과 법리에 따라 소외 1의 사망 당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소외 2 등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있는지를 밝힌 다음 이에 따라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.

라.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않은 채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. 원심판결에는 [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](#)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.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.

3. 결론

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·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,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대법관 노정희(재판장) 김재형(주심) 안철상 이흥구